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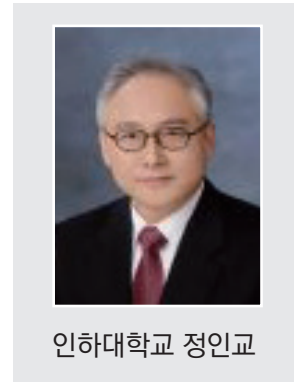
CPTPP 출범과 중소기업

| 외부 필진 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목차

- 1. CPTPP 출범 경과 02
- 2. TPP 규정 유예와 CPTPP의 수정 사항 05
- 3. 향후 CPTPP 전망과 우리나라의 가입 06
- 4. CPTPP 발효와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응 08



1.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출범 경과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은 2016년 공식서명후 회원국의 의회 비준을 받는 등 순항했으나,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선공약대로 TPP 탈퇴 행정서명을 함에 따라 협정 발효 전망이 불투명해졌음.
 - 미국을 포함한 12개¹⁾ 회원국으로 구성된 TPP는 세계 GDP와 무역의 37.4%와 25.9%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이 제외된 CPTPP는 각각 13.5%와 15%로 줄어들게 되어 무역블록으로서의 위상은 크게 축소
 - 미국 탈퇴는 경제효과 축소 뿐만 아니라 TPP 협정 발효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음.²⁾

표 1 TPP와 CPTPP 주요 경제지표

	TPP	CPTPP
회원국	12개국(미국 포함)	11개국(미국 탈퇴)
세계 인구비중	11.1%(8억 명)	6.9%(5억 명)
세계 GDP비중	37.4%(28.8조 달러)	13.5%(10.2조 달러)
세계 무역비중	25.9%(8.5조 달러)	15%(4.8조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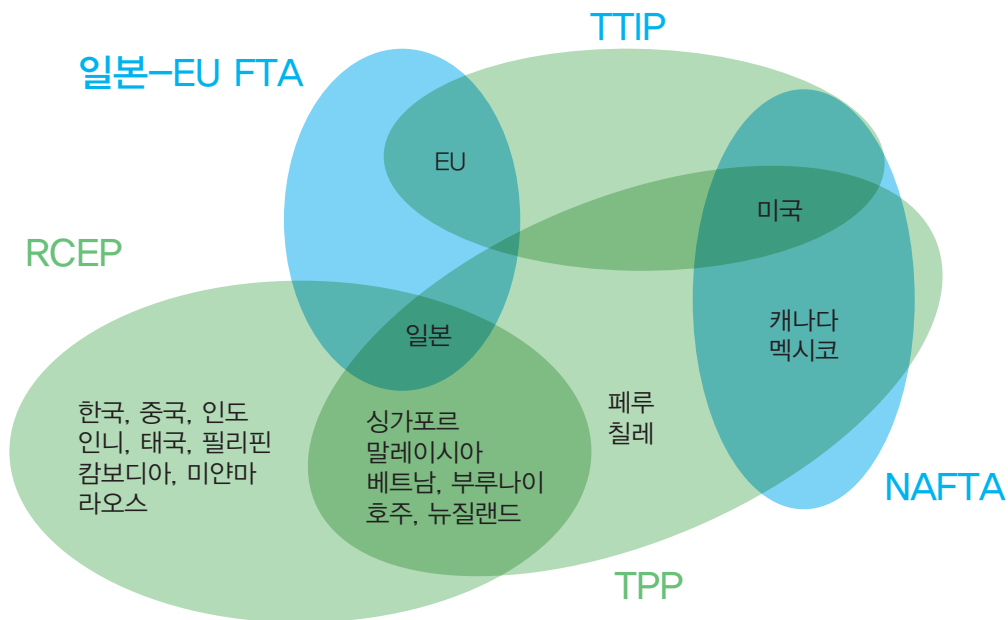
자료: WTO, 한국무역협회

1)12개 회원국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임.

2)TPP 협정상 회원국 GDP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이 비준하지 않으면 비준 불가 구조이었고, 발효 요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발효될 수 없는 상황 봉착

- 일본 아베정부는 TPP를 무역뿐 아니라 규제개혁, 투자환경 개선 등 다양한 경제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TPP 발효시 일본 GDP의 0.66%(3조2000억엔 상당)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홍보해 왔음.³⁾
 - 또한 TPP 발효와 EU와의 FTA 협상 타결을 통해 그동안 한국에게 뒤졌던 FTA 통상정책 실적을 일거에 만회하며 일본이 중심이 되는 통상협정 구도를 확립하는 효과를 거양하고자 했었음.

일본이 중심되는 무역협정 구상



-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중 TPP를 마지막 필살기로 추진했던 아베정부는 나머지 국가들을 규합하여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PP)로 명칭을 수정하여 되살리게 되었음.
 - 이 과정에서 기존 협정에서 개도국들에게 민감한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서비스 시장개방,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등 22개 분야를 유예시켰고, 문화산업 개방을 이유로 이견을 보였던 캐나다를 설득해 2018년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CPTPP 협정을 서명하였음.

3) 현 미국의 관세율표에 따르면, 일본의 미국 수출액 중 50% 이상이 관세 적용 대상이고, 일본의 대미 수출액이 가장 많으므로 TPP 국가 중 일본이 최대 관세철폐 이익 국가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추가협상을 통해 CPTPP 협상이 2018년 1월 23일 타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이틀 후 TPP 재검토 입장을 밝혔고, 므누신 재무장관 등 고위관계자가 TPP 관심표명을 하고 있으나 미국의 복귀 여부는 불투명함.

TPP 및 CPTPP 추진 경과

- 2016. 2. 4: TPP 협정 서명(미국 포함 12개 회원국, 뉴질랜드 오클랜드)
- 2017. 1. 23: 트럼프 대통령, TPP 협정 탈퇴 행정명령 서명
- 2017. 11. 12: CPTPP 추진 합의
- 2018. 1. 23: CPTPP 협상 타결
- 2018. 1. 25: 미 트럼프 대통령 TPP 복귀 관심 표명(스위스 다보스포럼)
- 2018. 3. 8: CPTPP 협정 서명(칠레 산티아고)

- 트럼프 대통령은 TPP와 같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미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자무역협정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대신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의 국익 반영을 최대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 CPTPP 회원국들이 미국을 복귀시키기 위해 별도의 추가양보를 할 수도 있을 것임.

- 미국의 TPP 재검토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반무역정서에 대한 미국내 반발을 고려한 조치일 수 있고, CPTPP 회원국이 새로운 제안을 할 경우 고려할 수 있다는 제스처로도 볼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주장하며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중국 견제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TPP 추진 목표를 새로이 인식했기 때문일 수 있음. 이 경우 미국의 TPP 복귀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

- CPTPP를 통해 TPP에서의 미국 지위를 일본이 차지하였으나, 메가 FTA로서 협정 발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일본이 리더십을 갖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 새로운 무역규범이 규정되어 있고, 다수 개도국들은 협정 이행 역량이 부족한데, 미국 부재로 협정 이행을 관리감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음.

2. TPP 규정 유예와 CPTPP의 수정 사항

- 2008년 미국은 기존 P4⁴⁾ 협정을 TPP로 개칭하고 ‘21세기 무역 규율’ 추진을 목표로 TPP 협상에 참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많은 신규 규범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도출하였음.
 - 또한 TPP 협정의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회원국 수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아태지역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무역블록으로 발전했고, 신규 회원국 가입 허용
- 하지만, TPP에는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개도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더러 포함되어 있었음.
 - 미국 통상당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개도국을 설득하여 공식서명을 했으나, 미국 탈퇴 결정 이후 이들 국가는 물론이고 뉴질랜드, 호주 등도 민감한 내용의 유예를 제기했음.
 - * TPP 협정의 민감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적용을 유예시킨 것은 향후 미국이 복귀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CPTPP 협상이 짧은 기간에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기서명된 TPP 협정에서 미국이 주장해 도입되었던 민감한 내용의 대부분을 유예시켰기 때문⁵⁾
 - 유예 내용은 저작권 (copyright) 보호기간 70년, 신약에 대한 데이터 또는 시장보호 의무, 특허 신청 절차 지연시 특허권 기간 연장 의무, 지재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처벌 조항, 개인정보 국경간 이동을 위한 세이프하버(safe harbour) 조항 등임.
 - 공중보건 및 공공교육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정부규제, 정부 대상 투자 계약에 대한 ISDS 조항 적용 유예함으로써 ISDS 적용 범위 축소⁶⁾
 - 정부조달에서는 국제 노동법 준수 촉진 의무 및 정부조달 범위 확장 추가 협상 의무 유예

4) TPP의 전신인 ‘P4(Pacific 4)’는 아태 지역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4개국간 FTA로, 2008년 미국은 당시 의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던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FTA 비준을 촉진시키고, WTO DDA 협상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TPP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후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중국 견제로 목표를 전환

5) CPTPP 협정은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며, 총 9페이지의 짧은 협정이며, 유예사항은 Annex에 정리하고 있음.

6) 뉴질랜드는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5개국과 ISDS 조항 자체를 유예시킴.

CPTPP 협정 유예조항 및 수정사항 예시

	유예 조항/수정 사항
지식재산권	- 의약품 특허보호 절차 및 자료보호 - 생물학의약품 특허 - 저작권 보호 기간 - 위성 및 케이블사업자 보호
투자 조항	ISDS 적용 범위
서비스 분야	- 특송화물서비스 보조금 및 독점적 지위 제한 - 금융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투자자 권리
투명성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산정 절차 투명성
협정 발효	회원국 50% 이상 혹은 6개국 이상 비준
신규 회원국 가입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 합의

자료: CPTPP 협정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 또한 CPTPP는 협정 발효, 가입, 탈퇴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음.
 - TPP에 비해 협정의 발효를 원활하게 했고 신규 회원국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함.
 - TPP 발효 요건 ‘회원국 GDP 85% 이상 비준’을 ‘50% 이상 혹은 6개국 이상 비준’으로 변경하고, 60일 경과후 협정 발효
 - TPP에서는 가입 절차로 아태지역 국가 요건 점검, 가입작업반 설치, 위원회 협의 등을 규정했으나, CPTPP에서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협정 발효 후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입하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가입절차를 단순화함.

3. 향후 CPTPP 전망과 우리나라의 가입

가. CPTPP 전망

- CPTPP 회원국중 선진국인 일본,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는 TPP 비준을 완료했거나 비준 직전 단계이었으므로 CPTPP 비준 역시 애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등은 집권당의 의회 장악력이 높기 때문에 의회 비준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
- 국내외 언론(전문가)들은 2019년, 늦어도 2020년 CPTPP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CPTPP 규정에 따라 협정 발효 이후 신규 회원국 가입이 가능하므로 12번째 회원국은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임.
 - 태국과 대만은 각각 작년 6월 및 금년 1월 CPTPP 가입 의사를 발표했으며, 우리나라는 TPP 관심을 표명한 상태
 - 태국과 달리, 대만은 '하나의 중국' 방침에 의해 CPTPP 국가와의 가입 협상 진행이 어려울 것임. 만약 가입 협상시 중국은 대만은 물론이고 가입 협상국에게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임.

나. 우리나라의 가입

- 우리나라의 경우, TPP보다 CPTPP 가입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며, 개선된 요인은 다음과 같음.
 - 먼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양자 및 다자(예가) FTA를 추진하여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함.
 - 둘째, 신규 회원국 가입 절차가 개별국과의 가입 조건 협상 타결로 간소화해졌음. 또한 미국과의 힘든 가입 협상도 고려하지 않아도 됨.
 - 셋째, 미국의 탈퇴로 경제적 위상이 TPP 절반 이하로 낮아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CPTPP 회원국도 신규 회원국 영입이 필요함.
 - 넷째, 지재권, ISDS 등에서 우리나라에게 민감한 조항의 적용이 일부 유예되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TPP 가입 애로 요인은 CPTPP에 그대로 적용됨.
 - 첫째, CP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FTA' 협상이며, 지난 2004년말 한일 FTA 협상 결렬 이후 양국간 FTA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음.
 - 둘째, 미국 대신 일본이 CPTPP 주도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회원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더 커졌음.
 - 셋째, CPTPP 가입의 거시경제 효과가 미미한 반면,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으로 인한 우리나라 제조업 영향은 클 것임. 참고로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TPP 12개 회원국 모두와 우리나라는 FTA를 체결(발효)하였음.
- 한편, 한미 FTA 개정협상 전망 및 향후 미국의 가입 여부가 우리나라의 CPTPP 조기가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만약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지연되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폐지 등으로 FTA 존속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우리나라는 CPTPP 조기가입을 검토해야 할 것임.⁷⁾
 - 한편, 미국이 탈퇴한 상황에서 '21세 무역협정'으로서의 CPTPP 역할이나 영향력은 축소될 수 밖에

7) 2018년 3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관세와 한미 FTA 개정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발표했다.

없으며, 미국이 조기에 TPP 복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조기가입 시급성은 떨어지게 됨.

- 또한 미국이 비회원국인 상황에서는 가입 협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향후 미국이 복귀하더라도 기존 회원국으로서 미국 가입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여건이 성숙되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히고 가입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

4. CPTPP 발효와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응

가. CPTPP 발효의 일반적 효과

- CPTPP 발효로 대형 무역블록의 출현을 촉진시킬 것임.
 - 현재 협상이 부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타결을 앞당길 수 있고, 상하이협정, 일대일로 등으로 지역경제통합을 모색중인 중국이 새로운 형태의 무역블록 형성을 추진할 수 있음.
- CPTPP는 아태 지역 최초 메가FTA로, 국제통상 규범 제정자로서 일본의 위상을 제고시켰지만, 미국의 탈퇴로 국제무역 흐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일본은 11개 회원국중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9개 국가와 양자간 FTA 기발효⁸⁾
 - 다만, 아태 국가와의 FTA 체결이 많지 않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수출시장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당초 TPP는 관세철폐 뿐 아니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여 협상 타결
 - 국영기업,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이 아태지역에 우선 확립되고 향후 FTA 및 WTO로 확산될 수 있음.
 -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영향을 받게 되고, 국영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여 민간기업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 나가게 될 것임.
 - 이미 무역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데이터 국경간 이전, 데이터 센터 해외 설치, 소스 코드의 이전 또는 접속 요구 금지 등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형태로 규범화 진전⁹⁾
 - 원산지 누적조항 허용으로 CPTPP 회원국간 중간재 및 부품 조달 유인이 확대될 것임.

8) 2016년 일본 상품의 총 수출액에서 CPTPP 회원국 비중은 14%인 반면, 미국의 비중은 16%임. 일본의 기발효 FTA를 감안하면, 미국 탈퇴로 일본의 TPP 무역이익은 1/5 수준으로 줄었음.

9) 김형주, 이지홍(2016), "TPP 이후 주목해야 할 사업환경 변화", LG Business Insight 2016. 3. 2.

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응

- 현재의 대내외 통상환경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CPTPP에 참여하게 될 것임.
 - 12개 TPP 회원국중 10개국과 FTA를 발효시켰고, 한일 FTA 애로, TPP 민감 규범 등으로 우리나라는 TPP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음.
 - 하지만,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WTO 무역자유화 부진, 메가 FTA의 경제효과, 새로운 무역규범의 국내 도입 등으로 CPTPP 참여 필요성 심화
 - CPTPP는 TPP의 관세철폐 일정을 변동없이 채택했고, 최종 자유화 비율은 95~100%가 될 정도로 개방도가 높으며, 개방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대부분 10년 이상의 철폐 기간 부여
- 전반적으로 CPTPP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이며, CPTPP 불참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및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불리해질 것임.
- 우리나라 CPTPP 가입시 수입 경합도가 높은 업종은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나,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전체 산업경쟁력 향상 기대
 - 산업내 품목이 다양하고 CPTPP 11개 국가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섞여 있어 동일한 내용의 관세자유화에도 수혜기업과 피해기업이 존재하므로 일괄적으로 불리한 업종을 지정하기는 어려움.
 - 한일 관계로 보면, 일본과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부품소재, 기계류, 석유화학, 고급의류 등 다수 국내 제조업 손실이 우려되며, 이를 포함한 복합적 요소들로 인해 우리 정부는 TPP(CPTPP)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했음.
- 상품과 서비스 시장개방과 전반적인 규제완화
 - TPP는 기존의 무역협정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개방이 추진되며, 비관세장벽 해소와 규제완화가 진행될 것이고, 국내 시장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되고 경쟁 수준이 강화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CPTPP는 규제 및 서비스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가티브 방식으로 규정
 - 네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과 개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포지티브 방식에 비해 파급영향이 커지게 됨.¹⁰⁾

10)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적용해 왔으나 네가티브로 전환될 것임.

- 서비스산업 규제가 심한 중남미와 동남아 개도국의 서비스 시장개방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 국가에 따라 개방 범위가 다르나 주로 물류, 교통, 통신, 사업서비스 등에서 추가시장 개방이 가능함으로 새로이 개방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임.
 -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CPTPP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반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였음.
 - 또한 이례적으로 투자 분야(챕터)에서는 타 협정에서는 찾기 어려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정
- CPTPP 참여를 전제로 아태지역 경제통합 시대에 부응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
- 우리 기업들은 가입을 대비하여 CPTPP 회원국과의 생산분업 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융복합 역량을 제고해야 함.
-